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3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관련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업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업무를 일부 삭제·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 」)표시
(안 제1조)
- 나. 옥외광고물 신고관련 업무를 사천시사무위임규칙에서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 조정함(별표 1)
- 다.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동 제외)를 신설하고, 문서보관 및 폐기, 당직명령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무를 삭제함 (별표 1)
- 라. 입산신고, 재해사실 확인 및 간이상수도 관련 사무,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동 제외)사무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동 제외) 위임 사무명을 수정함(별표 1), (전체 29건 중 삭제 8건, 신설 7건, 수정 6건)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녹지공원과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별표 1]</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 ----- -----.</p> <p><u>[별표 1]</u></p>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당초)

연번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3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보고)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삭제
4	당직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7조	삭제
5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6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7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8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동 제외)	지방세법 제196조 및 제234조의 25	삭제
9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0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2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3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4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연번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 계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삭제
1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 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2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21	매·화장,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22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3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삭제
24	재해사실 확인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사실 확 인원 발급지침	삭제
25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 8조제2항	
26	농지취득자격 증명(읍면 제외)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제95조, 농지법 제8조제1항	
27	간이상수도 물탱크 및 주변청 소, 소독실시, 시료채취 의뢰	지방자치법 제9조, 사천시간이상 수도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삭제
28	간이상수도 수시점검 기록 보존	지방자치법 제9조, 사천시간이상 수도관리조례 제7조	삭제
29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 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 의 관리등에 관한사항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 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 행령 제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주민등록법 제21조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제45조, 제 45조의 3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변경)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수정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수정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수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9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주민등록법 제21조 주민등록법 제18조		수정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수정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2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영 제5조내지 영 제8조		신설
2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신설
2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신설
2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신설	
2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신설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2조	신설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신설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읍면 제외)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제95조, 농지법 제8조제1항	수정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0>